

충주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2009. 2. 9(월)

조례안 심사보고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축디자인과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건축디자인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 2. 3	2009. 2. 3	2009. 2. 9	2009. 2. 9	건축디자인과장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9. 2. 3	2009. 2. 3	2009. 2. 9	2009. 2. 9	건축디자인과장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9. 2. 3	2009. 2. 3	2009. 2. 9	2009. 2. 9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안 제12조)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4조의2)
-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37조 제1항 중 별표 5)

나.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안 제2조)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사용용도(안 제3조)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7조)
- 시장도매인제 신설(안 제4장)
- 출하자신고제 시행(안 제39조)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 제8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금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12.21) 및 동법 시행령(2008.7.9)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며(안 제12조 제2항),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 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안 제34조의 2)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광고물실명제 신설(안 제34조의 2)
실명제 제도는 건축물, 농산품 등 제조물의 생산자 또는 관리자 등의 실명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안전·위생 등에 위해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임

충주시는 2008년부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불편한 사항의 개선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운동의 일환으로 168,000여건(고정 860, 유동광고물 167,070)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철거에도 충주시 옥외광고물의 경우 법령상 설치위치, 규격 등 기준에 어긋나거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전체광고물의

48%(전체 고정광고물 21,889건, 적법광고물 11,420건, 불법 광고물 10,469건, 충주시 2007년 광고물 일제조사 결과)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풍 등에 의한 광고물 추락사건 등 안전성 문제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고 도시미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부족과 광고물의 불법여부에 대해 육안에 의한 확인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보이나,

광고물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조례 공포 후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다소의 혼란이 우려되는바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 업주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 조례안 제34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영 제27조 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라는 광고물실명제 표시 광고물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는 우리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인 것으로 보여짐

나.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지난 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하고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토록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제정안 제5조에 있어 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될 경우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총 4인이고, 안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을 1~2명 위촉할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또한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위촉될 경우 최소 4인으로 광고전문가 및 민간인의 위촉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통상 위원회 설치시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게 되며, 안 제9조 제2항에도 간사를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간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치 않다고 보여지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개

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출하자 신고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시스템의 구축 및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음.

1)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안 제7조)

도매시장 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법 제23조가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8조 제2항의 지정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사항임.

2) 출하자신고서 시장에게 제출(안 제39조)

농산물 출하자신고제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및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체계 구축 및 불량, 위규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출하자가 미신고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출하가 금지 되는 바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출하자신고제의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시장도매인 규정 신설(안 제4장)

시장도매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을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병행하는 제도임

대다수의 도매시장에서 시행중인 경매제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상품의 전체적인 품질향상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통단계의 증가와 거래시간 과다소요로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상품가치하락, 심한 가격 진폭으로 인한 거래가격의 불안정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받아서 시장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유통단계의 축소로 농산물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직접 듣고 생산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비공개 거래로써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고 소량 다품목 생산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는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절대 우위인 상인이 가격 결정을 주도할 우려의 소지 또한 있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공영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기구로써의 시장 내 종사자뿐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기능도 다해야 하므로 제반 여건의 성숙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 관련 단체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안 제60조)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은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임(법 제35조 제2항)

기존에 도매시장 법인은 유통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을 통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전자거래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하역비와 배송비 등 물류비용의 절감과 유통시간의 단축, 농수산물의 특성상 운송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품 훼손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또한, 거래 당사자인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물류비 절감 효과 외에도 유통시간 단축에 따라 소비자 서비스 강화의 효과 또한 기대됨

5) 시장사용료 가산금 비율 조정(안 제70조 제4항)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수급의 편의를 도모하여 상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주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공설시장 및 중앙공설시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는 시장사용료의 가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의 가산금은 체납액의 3%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공설시장의 시장사용료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요율 차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 제85조)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출하자 또는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법 제78조의2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설치시 도매시장 내 민원의 외부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출하자 대표도 반드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됨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85조에 따른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등 심의·조정 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개의 및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질의 :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 용의는?
 - 답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명제 표시 대상이 아니나 상급 기관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음.
- ▶ 질의 :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추진은?
 - 답변 : 금년 6.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양성화 후 행정조치

나.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질의 : 기금의 적립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답변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음.
- ▶ 질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구성비율 높은데?
○답변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의한 사항이며 특별한 사유는 없음

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질의 : 출하자신고제에 중간수집상을 조문에 명시해야 하지 않나?
○답변 : 안 제39조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간수집상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위 법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사유 / 회의 개회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및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과 심의 조정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써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반영 수정함

- 불임 :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7과 별표8의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 정 안
제6조(회의) 회의소집은 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u>(신설)</u>	제6조(회의) ①----- ----- -----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